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95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23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3일, 김경훈 의원 외 33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4월 23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경훈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
경관 자원의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'경관 자원'을 반영한
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제
2항제8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·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‘경관 자원’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개정¹⁾으로 제5조에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‘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·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’이 추가된 바 있음.

또한, “경관 자원”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경관숲의 정의²⁾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우수한 산림의 ‘경관 자원’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음.

-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에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 됨.

1)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4. 4. 3] [법률 제19879호, 2024. 1. 2, 일부개정]

2) 경관숲 :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~ 11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